

D'LIGHT 

법무법인 디라이트

OTT산업 최신분쟁 동향

- 음악저작권 그리고 망사용료

변호사 황혜진

목차

1. 음악저작권과 저작인접권
2. OTT와 음악저작권 관련 최신분쟁
 3. 망중립성과 망사용료
 4. 망중립성 관련 최신분쟁
 5.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6. 마치며

Part 1. 음악저작권과 저작인접권

1. 음악의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

- ✓ 저작권자: 저작물을 창작한자 -> 작사가/작곡가
- ✓ 저작인접권자: 저작물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
 - 실연자: 저작물이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등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사람 (가수, 연주자, 댄서 등)
 - 음반제작자: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

과거: 음반제작을 위한 제반 시설을 보유한 음반제작사가 음반의 기획, 제작, 유통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으로 음반을 제작하고 유통함

현재: 음반기획사들이 가수들을 발굴한 후 이들을 전속시켜 이들의 음반제작을 기획하고 음반제작사에게 음반제작을 의뢰하여 그에 따라 생산된 음반의 판매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음반제작사와 계약에 의하여 분배함

-> 음반제작자를 확정하기 어려우나, 기획사를 음반제작자로 보는 경향

1. 음악의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



BUTTER – BTS

작사 Ed Sheeran, Steve Mac, Johnny McDaid, Jenna Andrews
작곡 Ed Sheeran, Steve Mac, Johnny McDaid, Jenna Andrews

제작사 YG PLUS / HYBE 360

2. 음악의 저작권 재산권 저작인접재산권



작사가/작곡가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
작성권



실연자

- 복제권
- 공연권
- 방송권
- 전송권
- 배포권
- 대여권
- 음반 사용에 대
한 보상청구권
(방송/디지털음
송송신/상업용
음반의 공연)

HYBE

음반제작자

- 복제권
- 전송권
- 배포권
- 대여권
- 음반 사용에 대
한 보상청구권
(방송/디지털음
송송신/상업용
음반의 공연)

3. 음반 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구분	내용	징수 대상 업체
방송 보상금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경우의 보상금	지상파 TV, 라디오, 케이블 TV, IPTV, 위성방송, DMB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인터넷을 통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디지털 방식의 음 송신에 대한 보상금	CJ파워캐스트, 플랜티넷, 토마토뮤직, 브랜드 라디오 등
공연 보상금	영업장 등 한정된 공간에서 대중에게 음악을 틀어주는 행위(공연행위)에 대한 보상금	스포츠경기장, 호텔, 백화점, 리조트 등

- 보상금청구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 가능
- 금액은 매년 위 단체와 방송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함
- 협의 불성립 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신청 가능

4. 저작권/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Federation of Korean Music Performers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재산권을 수탁받아 사용료를 징수하여 수수료 공제 후 권리자에게 배분
-> 각 기관별로 문화부의 승인을 받은 사용료 징수규정 보유

Part 2. OTT와 음악저작권 관련 최신분쟁

1. 신탁단체 VS. 영화관(2013)



저작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공연에 대한 이용허락 받지 않고
영화상영한 것은 저작권 침해



대법원

음악감독으로부터 이용허락 받음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적용

제99조(저작물의 영상화) ①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2. 신탁단체 VS. 방송사(2014)



저작권법위반죄 형사고소
 방송사용보상금은 TV채널에서
 음원 사용에 대한 보상금일 뿐
 -> 인터넷에 업로드 시
 복제/전송 사용료 별도 지급해야



보상의무의 존부
 If yes, 보상방법(사전? 사후?)
 에 대하여 정해진 것 없어
 저작권침해 인식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 불기소 처분

3. 신탁단체 VS. 토종 OTT(2019~)

2019.12.17.자 징수규정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3장 방송사용료

제16조(지상파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제17조(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방송사용료)

제18조(종합유선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제19조(위성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제19조의2(IPTV 등에 대한 방송사용료)

제19조의3(지상파 DMB에 대한 방송사용료)

제20조(중계유선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제21조(음악유선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제22조(이동방송서비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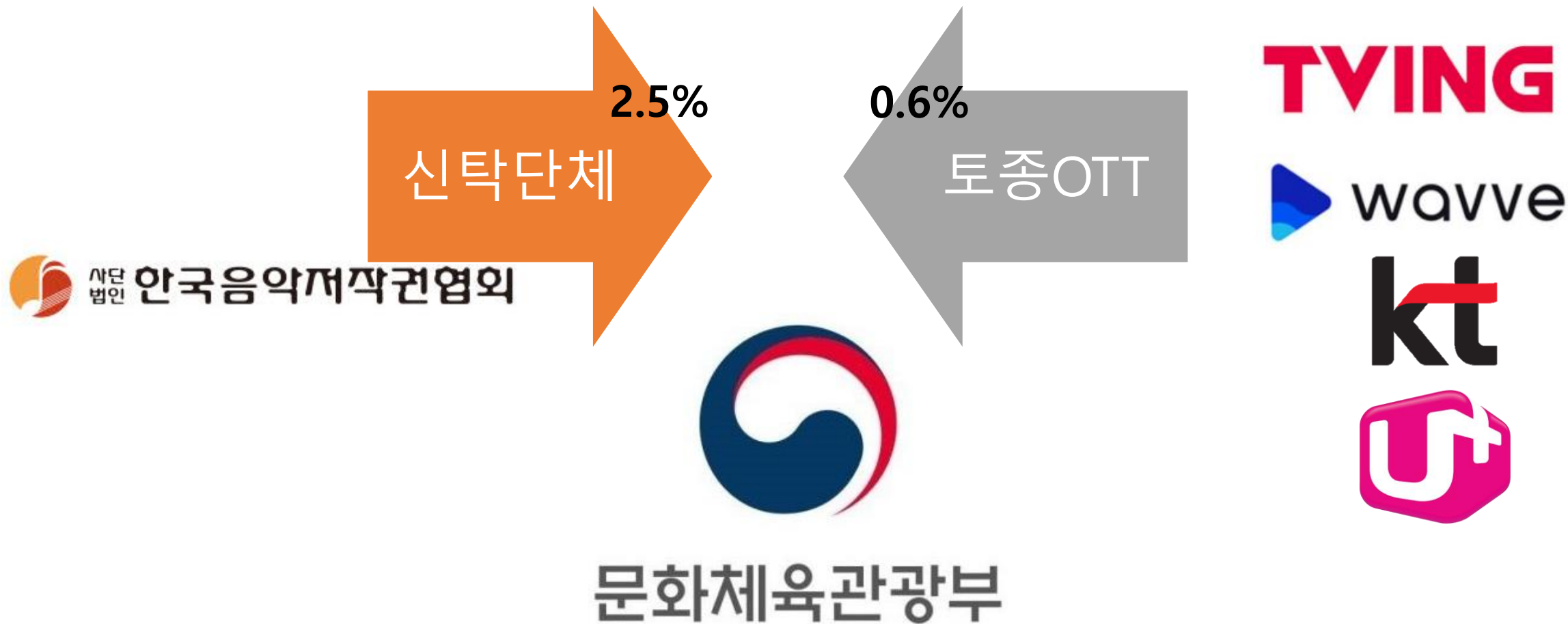
제99조(저작물의 영상화) ①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4.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①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NETFLIX
2.5%

종편 0.5%
IPTV 1.2%
재전송 0.625%

3. 신탁단체 VS. 토종 OTT



2021년 1.5% -> 2026년 1.9995% / 가입자당 월 105원 중 많은 금액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수정 승인

4. 토종 OTT vs. 문화부

 WATCHA PLAY









2021. 2. 5.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 취소소송 제기



OTT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문화부 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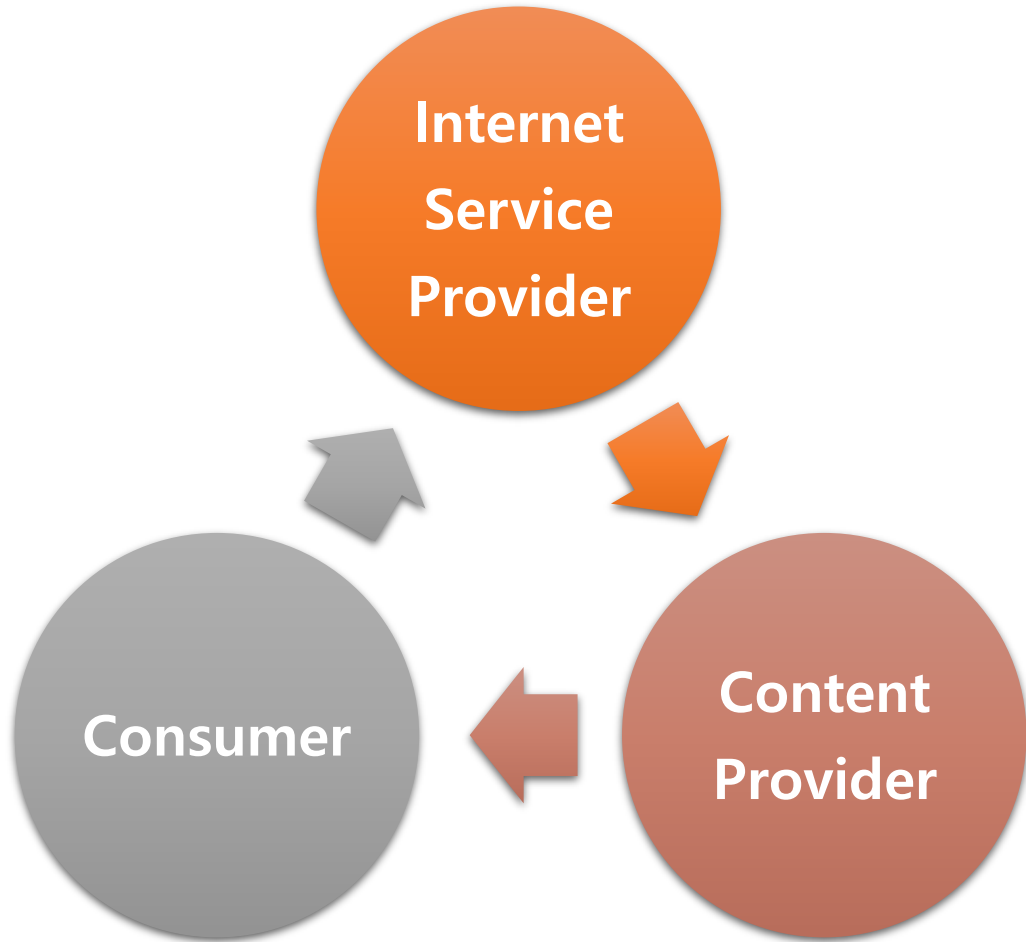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을 비롯해 함께하는
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
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레이블산업협회,
연예제작사협회, 웨이브, 티빙, 왓챠, KT, LG, 카카오,
네이버, 쿠팡

Part 3. 망중립성과 망사용료

1. ISP의 수익구조



2. 망중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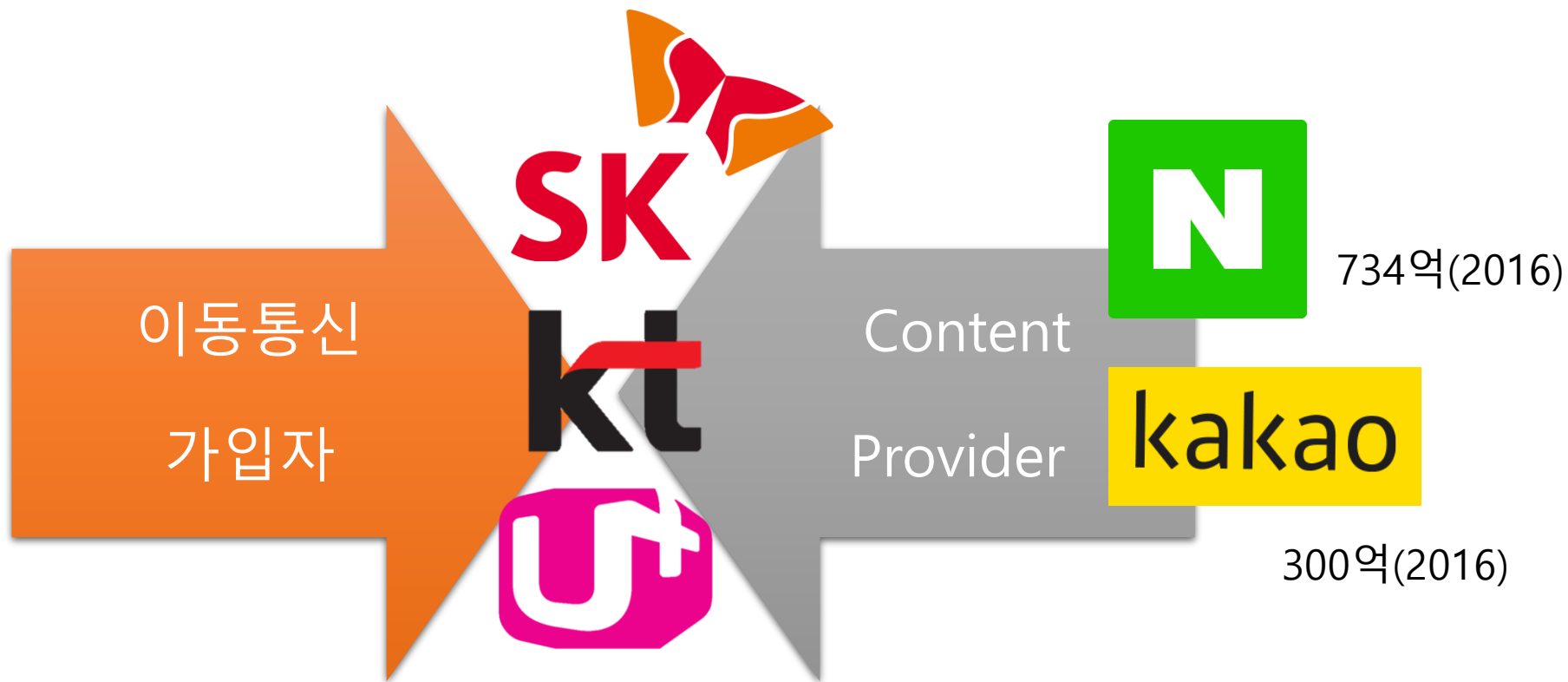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기본원칙	
구분	내용
이용자 권리	인터넷 이용자는 합법적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
인터넷 트래픽 관리 투명성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트래픽 관리의 목적, 범위, 조건, 절차 및 방법 등을 공개하고, 트래픽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실과 영향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 또는 공지하여야 함
위해되지 않는 기기 차단 금지	합법적인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 차단 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의 불합리한 차별 금지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 일시적 과부하 등 망 혼잡 해소, 관련 법령상 필요한 경우 트래픽 관리 허용

[방송통신위원회 블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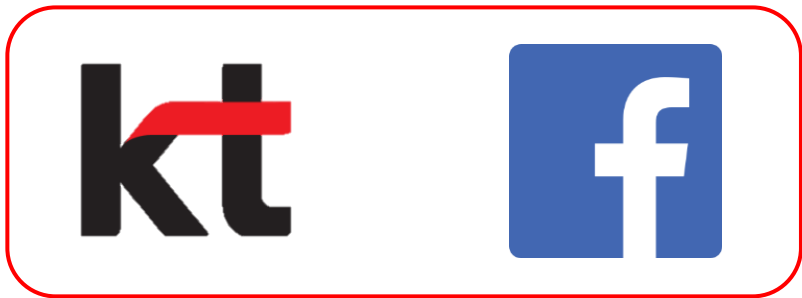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 ISP는 모든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을 동등하게 대해야 하고, 이용자, 콘텐츠, 웹사이트, 플랫폼, 기기, 발신자, 수신자, 통신방법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다르게 과금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2. 망중립성



Part 4. 망중립성 관련 최신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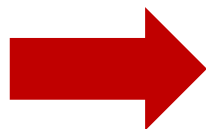
1. 방통위 vs. 페이스북



KT데이터 센터에 캐시서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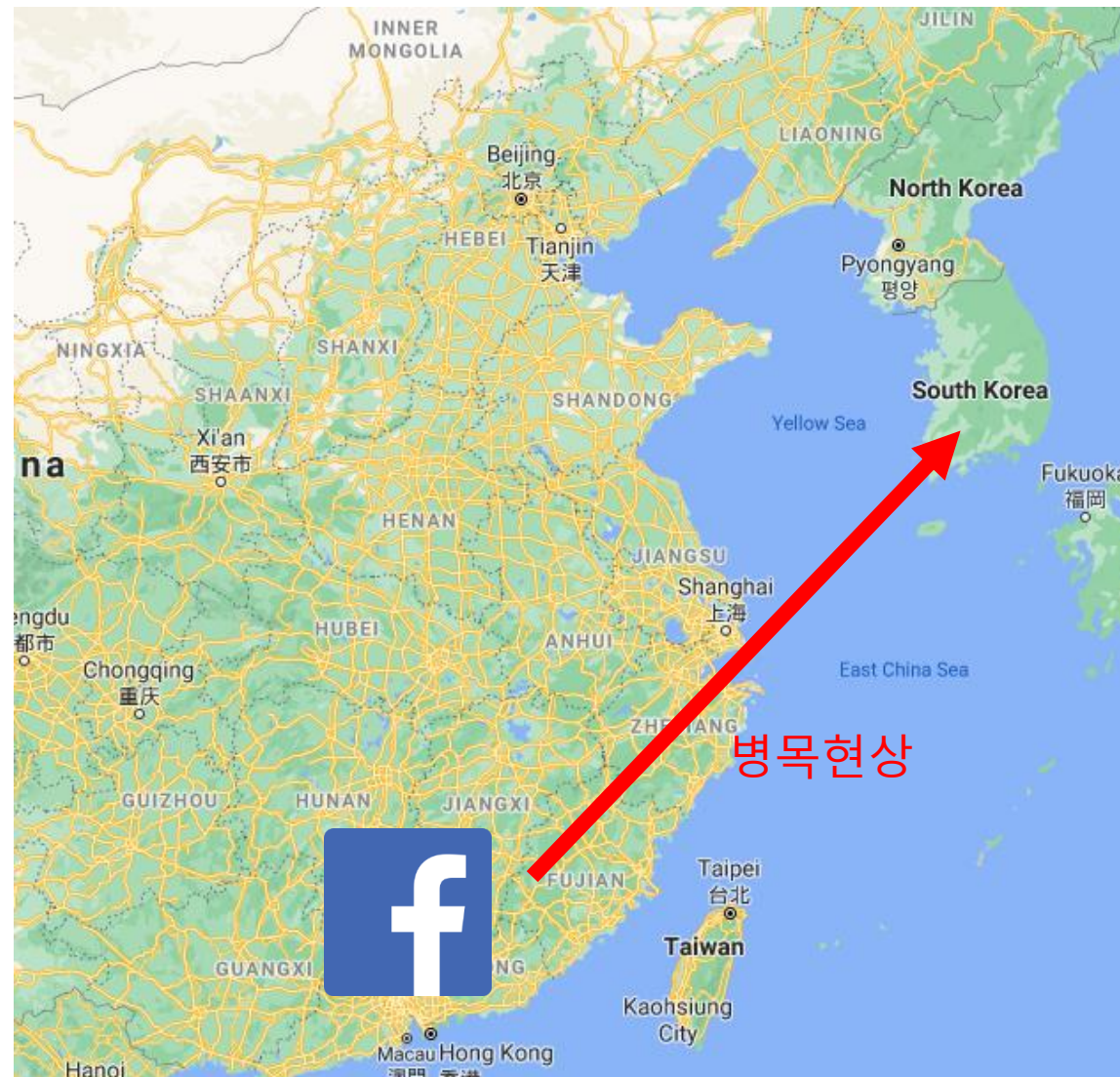
중계접속



2016. 1.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
(무정산->상호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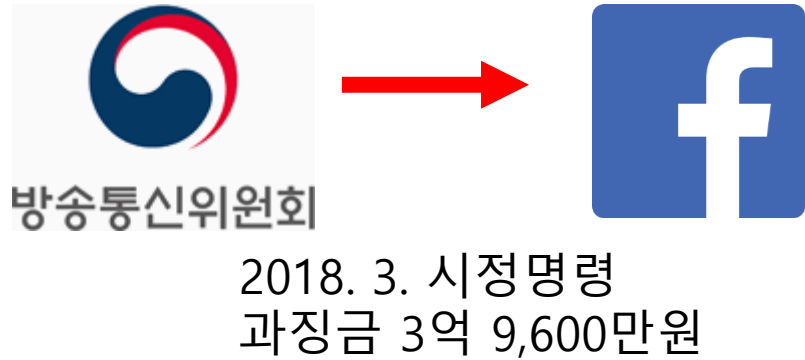


2016년 말~ 2017년 초



*서버가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의 복사본을 축적하여 이용자가 접속하고 있는 서버에 신속하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

1. 방통위 vs. 페이스북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5.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4] 제5호 (나)목 5)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1심(2019): 폐북 승소
2심(2020): 항소 기각
현재 상고심 진행중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국내 통신사와의 인터넷망 접속 관련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IP 트랜짓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접속경로를 변경하여 이용자의 네트워크 평균 응답속도를 지체시켜 많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한 이상,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여부: 인터넷 응답 속도 등 인터넷접속서비스의 품질은 기본적으로 ISP가 관리·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지, 원고와 같은 CP가 관리·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 ISP가 이용자들에 대하여 최저속도 보장 약관을 두는 경우는 흔하지만 CP가 이용자들에 대하여 최저속도보장 약관을 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현행 법령상 CP는 네트워크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해야 할 의무 또는 접속경로를 변경하지 않거나 변경 시 미리 특정 ISP와 협의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도 않는다.

2. 넷플릭스 vs. SK브로드밴드



소비자가 해외에 서버를 둔 CP의 콘텐츠 소비로 인하여
ISP에게 발생하는 비용

1. ISP의 국가간 트래픽 이동에 대한 요금 (중계접속료)
2. 네트워크 용량 확보를 위한 망 증설 비용



2019. 12.
망사용료 협상
재정신청



2020. 4.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재정절차 중단



2. 넷플릭스 vs. 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	쟁점	 넷플릭스
<p>원활한 콘텐츠 시청 위해 이용료 내서 망 품질을 높여야</p>	<p>망 이용료</p>	<p>소비자가 이미 이용료 내고 있으니 이중 과금</p>
<p>망 운영 및 투자 저해하는 개념</p>	<p>망 중립성</p>	<p>인터넷은 공공재, 모든 콘텐츠 동등하게 다뤄야</p>
<p>해외 콘텐츠 트래픽 급증, 국내의 망 품질 관리 어려워</p>	<p>망 품질 관리</p>	<p>콘텐츠 품질 관리는 콘텐츠 공급자 역할, 망 품질 관리는 망 사업자 역할</p>

[북저널리즘]

2. 넷플릭스 vs. SK브로드밴드

청구취지

'피고가 제공하는 인터넷접속역무를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이용자에게 대한 원고 A 유한회사의 D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인터넷 트래픽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피고의 국내 및 국제망을 통한 전송, 이러한 망의 운영, 증설 또는 이용에 대하여 협상하거나 그 대가를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법원의 판결

1. 이 사건 소 중 협상의무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2. 넷플릭스 vs. SK브로드밴드



1. 협상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

- 원고가 피고에게 대가지급채무를 부담하면, 협상에 응할 신의칙상 의무가 존재하고, 대가지급채무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피고와 협상에 응할 의무가 없음. 협상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들의 권리 또는 지위의 불안을 해소시킴에 있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인정하기 어려움.

2. 넷플릭스 vs. SK브로드밴드



2. 대가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

-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인터넷 망에 접속하고 있거나 적어도 피고로부터 피고의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 및 그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통신사가 자사망에 흐르는 합법적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인 망 중립성에 관한 논의나 '전송의 유상성'에 관한 논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적어도 피고로부터 피고의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 및 그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이 보는 것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형평에 부합한다

Part 5.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1.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의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 취해야**

넷플릭스 법 시행령

규제 대상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규제 내용	트래픽 집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취할 것. 안정성에 영향 미칠 경우 통신사에 사전 통지·협의를 할 것
처벌 규정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 일평균 트래픽 비중

*단위: %



트래픽 양 기준 관련 사업자 의견

사업자	의견	근거
네이버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둘 중 하나를 만족	트래픽양 적더라도 이용자 수가 많으면 보호의무 필요
넷플릭스	상위 3개 사업자 / 3%	필요 최소한 수범대상 확정 가능
카카오	5%	5%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으로 판단
네이버	0.35%	망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
ISP		

2020년 5~7월 국내 ISP 총 트래픽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아주경제 그래픽팀]

전년도 말 3개월 기준 일 평균 이용자(DAU)가 100만명 이상 + 국내 총 트래픽의 1% 이상을 발생시키는 CP사

1.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

(1) 전기통신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조치

- 이용자가 가입한 이통사에 따른 차별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전기통신설비의 사전점검 등 기술적 오류 방지 조치
- 트래픽 발생량의 과도 집중에 대비한 서버의 다중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
- 트래픽 발생량 증가에 대비한 서버 용량의 증가, 트래픽 경로의 최적화 등과 필요 이통사와의 협의
- 트래픽의 경로 변경 등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행위를 할 경우 이통사에 사전 통보

1.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

(2)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조치

- 영업시간 중 이용자 요구사항을 한국어로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또는 전화자동 응답 처리 시스템 확보
- 사전점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의 일시 중단 등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실 및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연락처의 고지
- 사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정지/해지한 경우 이용자 제작 자료의 전송을 사업자에게 요청하고, 전송받을 수 있는 수단의 확보

(3) 이용요금의 합리적인 결제수단 마련

Part 6. 마치며

새로운 플랫폼의 탄생과 비용의 분담

1. OTT라는 새로운 플랫폼의 탄생으로 콘텐츠의 새로운 소비방식도 생겨남

- 콘텐츠제작자에게는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가 생김
- 이동통신사는 새로운 비용을 부담하게 됨
- 음악산업과 이동통신산업은 전통적인 규제산업으로 문화부, 방통위도 대책마련에 동참하게 됨

2. 새로운 플랫폼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한 적절한 분담이 있어야

- 합리적인 비용의 분담 필요
- 이용자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 존재
- 양질의 콘텐츠, 이용자친화적 서비스를 통한 산업의 성장이 해법

www.dlightlaw.com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황혜진

02 2051 1870
010 3445 3821
hjh@dlightlaw.com